

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7일

나. 발 의 자: 김재우 · 김근한 · 김낙관 · 김민성 · 김원섭 ·  
김정도 · 박교상 · 신용하 · 양진오 · 이정희 ·  
이지연 · 정지원 추은희 의원(13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5월 17일

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재 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금고 운영의 보고,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일비 및 여비 등의 지급과 관련된 근거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의무 추가(안 제12조제1항)
- 금고 재무건전성 관련 금고은행 보고 의무 추가(안 제12조제3항)
- 일비 및 여비 등의 지급 근거 조례 정비(안 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
  -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
  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8조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우리시 금고 운영의 보고 사항을 보완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| 현       행   | 개   정   안   |
|---|---|
| 제8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, 권익보호,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 | 제8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|

|   |   |
|---|---|
| <p>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사회복지사 등의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사업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---|---|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제12조(금고운용 보고) ① 금고는 일반·특별회계(기금포함)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<u>평가보고</u> 등을 상·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| <p>제12조(금고운용 보고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평가보고,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어 시장이 금고를 관리할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|

- 안 제12조는 금고가 ‘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’을 시장에게 반기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, 금고 재무건전성 악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함.

- 구미시는 현행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상·하반기에 금고에서 금고운용 현황을 보고받고 있음. 보고내용은 회계구분별 정기예금,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(MMDA), 주요 경영지표, 금고 직원, 지역사회 기여실적 현황으로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임.
- 최근, 전산 및 보안관리가 중요해진만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는 시금고의 주요 평가 요소이며, 정기 보고 시 ‘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’을 추가한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| 현행  | 개정안   |
|---|---|
| 제13조(일비 및 여비등의 지급) 시 의원,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일비,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| 제13조(일비 및 여비등의 지급) -<br>-----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--<br>----- |

- 안 제13조는 관련 조례 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한 것으로,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는 2021년 11월 17일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으나 이에 맞추어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음.

집행기관에서는 적기적시에 조례 정비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확한 규정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
- 또한, 시금고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우리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시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집행기관에서는 운용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